

보고사항

제258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

2007년 3월 19일(월) 10:00

1. 의안 접수 : 6건(조례안 5, 동의안 1)

의안명	제출자	제출일자	회부일자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민경환의원 외 12인	'07. 2.23	'07. 3.1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안	강태원의원 외 13인	'07. 3. 6	'07. 3.13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도지사	'07. 3.12	'07. 3.13
충청북도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도지사	'07. 3.12	'07. 3.1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지사	'07. 3.12	'07. 3.13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지사	'07. 3.12	'07. 3.13

2. 진정서 등 접수 및 처리

접수일자	민원명	민원인	처리 상황	처리 일자
'07. 2. 1	충청북도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건	충청북도재향군 인회장(박영환)	처리	2007.3.2
'07.2.13	일제강점 만행사 시정	청주 상당 금천 176-14(유홍열)	처리	2007.3.2

陳情書 處理結果 通報

건 명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요청		접수일자	2006.7.24
민 원 인	주 소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15번지		
	성 명	박영환(충청북도재향군인회장)		
민원내용	<p>○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해 조례 제정을 요청함.</p> <p>○ 조례안 주요내용</p> <p style="padding-left: 2em;">가. 재향군인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도민의 보훈의식 고양 목적(안 제1조)</p> <p style="padding-left: 2em;">나. 도지사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5조)</p> <p style="padding-left: 2em;">다. 지원대상사업(안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 추모기념사업 -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 도민 안보의식 교육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등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달라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 조례제정은 신중을 기할 사항으로 각계의 의견등을 청취하여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집행부에 이첩 처리 	
	처리부서	자치행정국

陳情書 處理結果 通報

건 명	일제 강점기 만행사 시정	접수일자	2006.7.24
민 원 인	주 소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76-14	
	성 명	류 홍 열	
민원내용	<p>○ 민원사유</p> <p style="margin-left: 20px;">가. 한국 주변국의 과거사 왜곡 시정</p> <p style="margin-left: 20px;">나. 한국민족의 확고한 정서함양</p> <p style="margin-left: 20px;">다. 국권의 당위력 제고</p> <p>○ 시정대상 : 일제의 한국민족 정기 말살책으로 고유한 地名, 山名, 川名, 道路 등을 개명한 것</p> <p>○ 시정방법</p> <p style="margin-left: 20px;">가. 전국 또는 도별로 일제강점기 개명한 지명, 산명, 천명, 도로 등 조사</p> <p style="margin-left: 20px;">나. 일제 강점기 창지개명 복원법(조례) 제정 시행</p>		
처리결과	<p>○ 본 민원은 일제시대 創地改名된 지명을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후손들이 일본의 만행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민원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p> <p style="margin-left: 20px;">※ 민원인은 2006년 행자부에서 실시한 「행정구역 명칭 일제정비」에 대해서도 알고 있음.</p> <p>○ 다만, 각계 의견수렴 등 검토결과 조례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일제정비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첩 처리</p>		
	처리부서	자치행정국	